공인 관련 보도에 대한 주요 쟁점 논의

언론중재위원회,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동 토론회 개최

언론중재위원회는 11월 9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동으로 "공인 보도와 언론조정중재"라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로스쿨생과 위원회 조사관이 패널로 참가해 로스쿨생이 피해자와 언론사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밝히고, 이후 위원회 조사관이 실무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언론중재위원회 권성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이 자리는 실무에서 처리된 실제 조정사례를 통해 토론이 이뤄지는 만큼 현장 중심의 법이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경험이 되리라 생각한다"면서, "로스쿨에서도 법원 송무 중심의 교육 외에도 조정, 중재와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손기식 원장은 "오늘 이 토론회가 학생들이 언론과 인격권에 대해 공부하고 언론이 본연의 기능을 다함으로써 민주주가 발전하고 유지되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1세션에서는 공인의 가족에 대한 범죄보도와 관련한 문제점이 논의됐다. 공인의 가족에 대해서도 공적 인물로 보아 실명으로 보도해도 되는지, 고소인의 주장을 단순히 전달한 의혹보도에 대해서도 정정보도가 가능한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공인의 초상이 공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에 대해서는 공인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가족을 공적 인물로 보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제3자의 주장을 단순히 전달한 보도라도 사실적 주장으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며, 허위보도라면 공인의 초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견해가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

제2세션에서는 유명인 가문과 결혼설이 있는 사인의 사생활 공개의 범위에 대해 다뤄졌다. 결혼 상대방인 사인의 개인정보 공개가 공적인 관심사인지, 이에 대한 언론사와의 통화내용 보도가 음성권을 침해하는지, 과거 공인이었던 자가 현재도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결혼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결혼 상대방인 사인의 사생활까지는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될 수 없고, 인터뷰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가 없으면 음성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며, 과거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사인이면 공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많은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로스쿨생, 교수, 언론인 등 6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질의응답을 가졌다.